



장애학생 지원 규칙

규정번호	3-4-16
제정일자	2011.03.01
개정일자	2016.09.01
개정번호	Ver.3 총페이지 2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동양미래대학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활동 및 생활편의 지원을 위하여 장애학생의 정의 및 담당 기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장애학생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요루, 간질, 지적, 정신, 자폐성 장애를 가진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장애학생지원실의 설치 및 구성) ①장애학생의 교육활동과 생활편의 지원을 위해 동양미래대학교 학생서비스센터 내에 장애학생지원실(이하 “지원실”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실에는 학생부처장을 실장으로 하며 장애학생 지원을 위해 전문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실의 기능) 지원실은 일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 및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일
2.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일
3. 장애학생의 학사, 진로, 생활 상담에 응하는 일
4. 장애학생의 지원도우미 및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일
5. 장애학생의 실태조사 및 제반 대책을 연구하고 실행하는 일

제5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3호는 장애학생 지원부서 또는 전담직원이 수행할 수 있다.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기타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당연직 위원으로 학생부처장은 위원장이 되고, 장애학생지원 담당자는 간사가 된다.

③위원은 장애학생의 지도교수를 우선으로 하여 총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보고 및 시행) ①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